

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	1993. 9. 7	조례 제 792호
개정	1996. 1. 6	조례 제 914호
	1997. 1. 15	조례 제 987호
	2003. 11. 18	조례 제1323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4. 6. 25	조례 제1344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0. 11. 25	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1. 12. 30	조례 제1817호
일부개정	2013. 8. 1	조례 제193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4. 8. 14	조례 제200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5. 5. 28	조례 제2082호
일부개정	2016. 9. 26	조례 제2196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8. 8. 30	조례 제240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20. 3. 25	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21. 12. 23	조례 제2801호
일부개정	2023. 9. 25	조례 제2999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20. 3. 25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10. 11. 25, 2013. 8. 1, 2014. 8. 14, 2015. 5. 28, 2018. 8. 30, 2020. 3. 25, 2021. 12. 23, 2023. 9. 25>

1. 5명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 다만,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2. 2명의 위원은 광명시의회의원 1명과 자치행정국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. <개정 2015. 5. 28, 2020. 3. 25, 2021. 12. 23>

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광명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97. 1. 15, 2020. 3. 25>
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 <개정 96. 1. 6, 2008. 6. 16, 2011. 12. 30, 2016. 9. 26, 2020. 3. 25>

1.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
3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
4.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
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. <개정 2015. 5. 28>

1. 광명시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08. 6. 16>

제3조의2(심사기준)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1. 12. 30]

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5>

② 광명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8. 7. 31, 2020. 3. 25>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96. 1. 6, 2008. 6. 16, 2020. 3. 25>

1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
2.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
3.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
4.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

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1.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
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
3.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

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을 할 때 이를 제외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제7조(위원회의 간사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,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. <개정 97. 1. 15, 2003. 11. 18, 2004. 6. 25, 2010. 11. 25>

제8조(수당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·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97. 1. 15, 2008. 6. 16, 2011. 8. 9, 2020. 3. 25>

제8조의2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및 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으로 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”는 “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”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12. 30]

제9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1. 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7. 1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11. 1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4. 6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실장”으로 한다.

⑤ 부터 ⑦9 까지 생략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⑥ 부터 ⑦ 까지 생략

부칙 <2011. 12. 30 조례 제181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8. 1 조례 제193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⑰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8. 14 조례 제200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안전자치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⑬ 까지 생략

부칙 <2015. 5. 28 조례 제208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부칙 <2016. 9. 26 조례 제2196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
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8. 8. 30 제240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
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㉔ 까지 생략

㉕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행정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㉖ 부터 ㉙ 까지 생략

부칙 <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
조례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3 조례 제280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9. 25 조례 제299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
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행정재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⑮ 까지 생략